

의안번호	2220578
의 퇴 인	문진석 의원
회 답 일	2026. 8. 28.
추 계 번호	26A4079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 및 불평등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억원, 2032년 1,6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억 6,400만원(연평균 9,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 제6조에 따라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 2032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8조)	16	16	16	16	16	78	16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 (안 제16조)	71	—	—	—	—	71	—
불평등 실태조사(안 제20조)	313	—	—	—	—	313	—
합계	400	16	16	16	16	464	93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6조(불평등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제8조(위원회의 구성)	○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 —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2조(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3조(사무기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4	안 제16조(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	○ 위원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9조(다차원적 불평등 지표의 개발·관리)	○ 위원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20조(불평등 실태조사)	○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 등 효율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23조(소득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24조(자산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5조(교육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26조(건강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등을 해소하며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7조(주거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지원 등을 통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8조(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30조(공론화)	○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불평등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제8조(위원회의 구성)	○	
2	안 제12조(분과위원회)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3조(사무기구)	×	
4	안 제16조(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	○	
5	안 제1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6	안 제19조(다차원적 불평등 지표의 개발관리)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20조(불평등 실태조사)	○	
8	안 제23조(소득 불평등의 해소)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24조(자산 불평등의 해소)	×	
10	안 제25조(교육 불평등의 해소)	×	
11	안 제26조(건강 불평등의 해소)	×	
12	안 제27조(주거 불평등의 해소)	×	
13	안 제28조(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	
14	안 제30조(공론화)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중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참석 수당) 등의 비용으로 가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대통령)과 부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 5:5 비중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개최 횟수는 제정안이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
 -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을 감안하여 회의당 30만원¹⁾으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기존에 유사한 사회정책 분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행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 등 효율적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기존에 유사 실태조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5개 주요 불평등 영역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며, 각 영역별 조사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기존 유사 실태조사 용역비의 평균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5개 영역별 용역비의 합계로 산정되는 것으로 가정

1)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일당 20만원내(서면심사 15만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한하여 10만원 추가,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pp. 150~151)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7,8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됨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2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을 5:5 비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13인으로 전제하여 추계함
 - (횟수)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제정안이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하여 추계함
 - (단가) 민간위원 1인당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을 감안하여 회의당 3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2]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민간위원 수×회의 횟수×회의 수당)	16	16	16	16	16	78	16

주: 1.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 단가는 민간위원 13명, 회의 개최 횟수 연 4회, 회의 참석 수당 30만원 가정
2.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6조)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28년에 7,100만원으로 추계됨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소요는 제정안과 유사한 사회정책 분야 기본계

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7,1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에는 2028년에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3] 제정안과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6~'30)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성평등가족부	2025	4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성평등가족부	2024	62
재난 기록·보존 및 교육 등의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	2024	80
해양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2024	99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24	70
평 균			71

주: 연구용역 금액은 단수 조정을 위해 반올림한 값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 산정책처 작성

[표 4]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본계획 수립	71	—	—	—	—	71

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계기간 중 2028년에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다. 불평등 실태조사 (안 제20조)

□ 제정안에 따라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 등 효율적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 불평등 실태조사 5개 영역(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별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한 실태조사 용역비의 평균액(6,300만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 합계액으로 추계함
-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에는 2028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5] 제정안과 유사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제6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2025	67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연구	성평등가족부	2025	72
도시 기후불평등 대응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국민통합위원회	2024	49
평균			63

주: 연구용역 금액은 단수 조정을 위해 반올림한 값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6] 불평등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제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불평등 실태조사 [유사 실태조사 평균액 (63백만원)×5개 영역]	313	—	—	—	—	313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